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계약 목적)

이 규정은 해드림재가복지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제24조(계약 기간)

1. 계약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시에는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가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④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⑤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수급자 가정에 발송한다.

제25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 6%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25년도 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3.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025년 방문요양서비스 수가]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2025년 방문목욕서비스 수가]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86,480	77,970	48,690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 ②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③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④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① 수급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수급자의 보호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급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급자

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급자(또는 보호자)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 ① 수급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 ⑥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③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 ④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정보제공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2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기타 센터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28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